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 양 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출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며,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환경변화와 사회통념에 맞도록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피지정인)과 국장이 되기 위한 연령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담률 인상(안 제33조제3항)

직원의 개인부담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나.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4항)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원간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안 부칙 제5조 및 제6조)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직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라. 유족연금액 조정(안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10조 삭제)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이 법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함.

마.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 동결(부칙 제7조)

이 법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안 제25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

부담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 직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함.

사.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제1항)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아.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2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2항)

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자.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

직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차.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24조제2항제2호, 제25조의13, 제33조, 부칙 제17조)

직원이 공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장해 시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원의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카. 연금수급요건 조정(안 제2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7항 및 제25조의3제3항)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타.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의 산정기준 변경(안 제25조의5제3항, 제25조의6제1항)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함.

파. 피지정인 및 국장의 연령요건을 완화(안 제3조의2제1호, 제5조제1호)

피지정인 및 국장의 연령요건을 민법 상 성년 연령인 19세로 조정

함.

법률 제 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공무상 장애연금

제25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
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
족연금은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의”를 “다음 각
호의 급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
위금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80”을 “16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년”을 각각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천분의 19”를 “100만분의 17,000”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3년”을 “3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를 “제25조의2제5항·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7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5조의5제3항 중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중 “기준소득월액”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3(비공무상 장애연금) 직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2호 및 제5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제2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1호 중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으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호 중 “제27조의2제2항”을 “제2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 중 “비용은”을 “비용(제25조의13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포함한다)은”으로 하고, 제2항 단서 중 “33년”을 “3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천분의 70”을 “1만분의 900”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80”을 “160”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를 각각 “제2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4호의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정한다)”를 “자녀”로 한다.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천분의 10에 대하여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 전 3년간 전체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적용 비율(%)
0.3 미만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제4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

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

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6조(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부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4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4년 이하인 경우: 36년

제9조(분할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25조의10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25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10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7항·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공무상 장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칙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부

칙 제10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과 같이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u>20세</u>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 5. (생략)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 -----. 1. <u>19세</u> ----- --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u>20세</u>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 6. (생략)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 ----- ----- 1. <u>19세</u> ----- --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보고 및 장부검사 등) ①~ ③ (생략) <u><신설></u>	제19조(보고 및 장부검사 등)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4조(급여) ① (생략)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 라. (생략) <u><신설></u>	제24조(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2. <u>비공무상 장해연금</u>

2. (생략) 가. ~ 마. (생략) 3.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가. ~ 마.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생략)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 ----- ----- ----- ----- ----- ----- ----- ----- ----- ----- -----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u><신설></u> ② 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	② ----- ----- -----

죽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 다음 각호의 금액-----

----- 160-----.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못 미치는 해수 [이하 “미달연수(未達年收)”라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

④ -----

-----.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
10년 -----

1. ~ 3. (현행과 같음)

② -----
10년 -----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

1. ~ 5. (현행과 같음)

[illegible]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illegible]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 : 제5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

⑧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같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⑨ (생략)

-----<후단 삭제>

⑦ ----- 10년 -----

-----제25조의2제5항·제9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삭제>

<삭제>

⑧ 제5항-----

-----제5항-----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 ② (생략)

③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 직원이 수재(水災)·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생략)

<신설>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0년-----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

<신 설>

있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신 설>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25조의3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

<신 설>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	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의13(비공무상 장해연금) 직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2호 및 제5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 ----- ----.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	--	---	---

<신 설>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 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금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 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 ----- ----- -----.
<신 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 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 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 되는 경우		1. 전년도 <u>평균임금월액</u>을 초과 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 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 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 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 -----<u>평균연금월액</u>----- ----- ----- -----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u>사업 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u>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 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 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 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 이라 한다)이 전년도 <u>평균임금 월액</u>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 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u>사업 소득금액</u>----- ----- ----- ----- ----- ----- -----<u>평균연금 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 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u>-----		2. ~ 5. (생 략) ③ 제2항의 "<u>평균임금월액</u>"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 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 준으로 「통계법」 제3조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근로자 임금에 관한 노동통계자 료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 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u>평균임금월액</u>의 산정과 지급정 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생 략) 1.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제3항----- <u>평균연금월액</u>----- ----- -----.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 5. (생략)

제31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
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급
여에 드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
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

2. 제27조의2제3항-----

3.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
류할 수 없다.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
비용(제25조의13에
따른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포함
한다)은 -----

(단서 현행과 같음)

② -----

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
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
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
금을 낸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
니한다.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
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
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
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
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
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
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
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한다.

⑥ (생략)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생략)

-----36년-----

③ -----
----- 1만분의 900-----

--- 160-----.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4
조제2항제4호-----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① (현행 제6의 부분과 같
음)

<신 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4조 제2항제4호-----
⑤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⑤ 제24조제2항제4호----- -----..
1. ~ 3. (생 략)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정한다)의 양육 또는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
5. (생 략)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 ----- -----<단서 삭제>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 ⑤ (생략) 제10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5제2항·제4항 및 제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직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연락처	(044) 200 - 8161